

1

지방세 지출 개관

① 개념

- ‘지방세 지출’은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서 ‘비과세’와 ‘감면’으로 구분, 이 중 감면이 지방세 지출 재설계 대상
※ 비과세납세의무 배제(영구, 「지방세법」) ↔ 감면세부담 경감(한시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)

② 현황

- ‘24년 비과세·감면액은 16.3조원, 비과세·감면율은 12.5%
 - 비과세·감면율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목표* 이내 관리
 - * 직전 3개년 지방세 비과세·감면율 평균 + 0.5%p(「지방재정법」 §28의2) / ’24년 12.9%, ’25년 13.0%
- 국세·지방세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, 비과세·감면의 효율화를 통해 감면율은 국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 관리

< 최근 5년간 국세·지방세 지출 규모 및 비율 >

구분		‘20년	‘21년	‘22년	‘23년	‘24년
지방세	징수액 (조원)	102.0	112.8	118.6	112.5	114.1
	비과세·감면액 (조원)	14.9	15.7	16.8	16.2	16.3
	비과세·감면율 (%)	12.8 (목표:14.3)	12.2 (목표:13.8)	12.4 (목표:13.3)	12.6 (목표:12.9)	12.5 (목표:12.9)
국세	징수액 (조원)	303.7	364.0	421.3	370.4	365.7
	비과세·감면액 (조원)	52.9	57.0	63.6	69.8	70.5
	비과세·감면율 (%)	14.8 (목표:13.6)	13.5 (목표:14.3)	13.1 (목표:14.6)	15.8 (목표:14.3)	16.1 (목표:14.6)

③ 운영 경과

- 「지방세 지출 기본계획」 수립·국무회의 심의, 각 부처 통보(~2월)
- 관계부처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건의 수렴(~3월)
-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심층평가 실시(100억원↑ 신설·일몰도래 감면, 2~6월)
- 지방자치단체 통합심사 실시(행안부·자치단체·지방세연구원, ~6월)
- 관계부처 사전 의견조회(7월), 「지특법」 개정안 입법 예고(8~9월)